

#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4
----------	----

제출년월일 : 2002. 5.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환경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區의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전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게시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6조)

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상업성 광고, 욕설, 음란물 등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2조)

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주민참여마당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 제14조)

바. 지역정보화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제16조)

사.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국외에도 구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도 병행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자료 보안관리 및 시스템의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요령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행정자치부의 조례안(표준안)시달

나. 입법예고 : 2002. 4. 15 ~ 5. 4, 주민제출의견 없음

##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홈페이지 정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자료를 말한다.
5.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구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운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의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확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자료의 직접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입력의되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을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입력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장난성 내용, 욕설, 음란물 및 게시판의 개설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또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이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수시 검색하여 민원신청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참여마당은 개설처지, 이용형태에 따라 실명·비실명, 공개·비공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5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사하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번호관리)**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